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5
----------	-------

제출년월일 : 2018.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조례상의 '구정신문'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법령에 맞게 '소식지'로 변경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명)

나. 조례 입법취지 보완

- “서울특별시마포구정을”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으로 구민에게 알리는 내용 추가 (안 제1조)

다. 소식지 발행과 활용

- “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로 소식지 게시 내용 추가 (안 제4조)

라. 객원기자 임기 제한 규정 추가

- 객원기자의 다양성과 신규 유입을 위해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0조)

마.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1조)

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국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 (안 제13조)

사. 활동 중인 객원기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2. 22.~3. 14.(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권고사항 반영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18. 3. 29.)
-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정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를”로 한다.

제2조 중 “신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발행일등)”을 “(발행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문은”을 “소식지는”으로, “발행하는”을 “지면으로 발행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신문의 발간·보급등”을 “소식지의 발간·보급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신문”을 “소식지”로, “문화등”을 “문화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문”을 “소식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정홍보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8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행등”을 “발행 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의 남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관한”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신문”을 각각 “소식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사 내용”을 “기사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광고등”을 “공익광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신문발행”을 “그 밖에 소식지 발행”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업무담당주사”를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록등”을 “회의록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객원기자등 위촉·운영)”을 “(객원기자 등 위촉·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문”을 “소식지”로, “수집등”을 “수집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중”을 “구민 중”으로,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의 제목“(광고의 게재등)”을“(광고의 게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11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급등에 관하여”를 “환급 등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수당등)”을“(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문”을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신문의”를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로, “배부방법등”을 “배부방법, 제작형태 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객원 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 객원 기자의 임기 개시일은 이 조례 시행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 관한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정</u>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u>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u>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제호) <u>신문</u>의 제호는 "내고장 마포"로 한다.</p> <p>제3조(발행인) <u>신문</u>의 발행인은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으로 한다.</p> <p>제4조(발행일등) <u>신문</u>은 월 1회, 매 월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u>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를</u> ----- ----- -----.</p> <p>제2조(제호)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u>--.</p> <p>제3조(발행인) <u>소식지</u>의 발행인은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p> <p>제4조(발행일 등) <u>소식지</u>는 ----- ----- <u>지면으로 발행하는</u> -- -- 하며,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u> 게시할 수 있다.</p>

제5조(주관) 신문의 발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6조(게재내용) 신문 게재내용은 규정·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정홍보지 「내고장마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 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간·보급 등-----
-----.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 -----
----- 문화 등 -----

-----.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

-----.

② -----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

③ -----
----- 위원 중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1. -----

사람
2. --- 발행 등 -----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
정·심의한다.

1. 신문 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신문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
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공보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
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등을 작
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 사람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

전임위원의 남은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
--- 각 호의 -----

1. 소식지 -----
2. 소식지 -----
3. 기사 내용-----
4. 공익광고 등 -----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

제9조(간사 등) ① -----
----- 1명
과 서기 1명-----.

② ----- 홍보업무 담당
주사-----
-----.

③ ----- 회의록 등-----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객원기자등 위촉·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는 구민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 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광고의 게재등) ①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0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①

----- 소식지 -----

--- 수집 등 -----

-----.

② ----- 구민 중 -----

----- 공무

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③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 필요 -----

-----.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② ~ ④ (생략)

⑤ 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⑥ 유료광고에 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선납제에 따른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광고료수납, 광고료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 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 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⑥ -----

----- 환급 등에 -----
-----.

제12조(수당 등) ① ----- 위원 중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 소식지-----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신문의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

--.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 배부방법, 제작형태 등-----.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제2항
: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비용 총계 : 3,280천원(2018 세출예산 요구액)

○ 산출내역

편성목	예산액(천원)	내용
일반보상금	3,280	독자투고, 이벤트, 어린이 기자단 상품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제2항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은 2018년 세출 예산 요구액 기준 비용이 1억원 미만으
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공보담당관 박효진
연락처	02-3153-8265